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3099-그2호 2019년 9월 23일(월)

조 례

충청북도조례	제4307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충청북도조례	제4308호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충청북도조례	제4309호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충청북도조례	제4310호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8
충청북도조례	제4311호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15
충청북도조례	제4312호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4
충청북도조례	제4313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충청북도조례	제4314호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충청북도조례	제4315호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충청북도조례	제4316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충청북도조례	제4317호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충청북도조례	제4318호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8
충청북도조례	제4319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55



조 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07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경제·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12조) ○ 남북교류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20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08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및”을 “중”으로, “1~6급까지의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단”을 “다만”으로, “1~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변”을 “충청북도와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8.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판매시설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의 허가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설치·운영 및 허가사항 추가(제7조) ○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제4조제2항)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09호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을 “위촉기간 및 정년”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제8항의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산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년(제9조제3항), 퇴직시기(제9조제4항)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0호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북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여 충청북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
- 3.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도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9조, 제10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1호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둔다.

② 감사단은 3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법률, 회계, 건축 및 노무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1명 및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과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① 도지사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함(제5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2호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소재·부품산업”이란 제1호를 제조·조립·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재·부품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재·부품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을 말한다.

- 4.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내 소재·부품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내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재·부품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축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와 제4호 중 현재 운영중인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도에 소재하는 기업
2. 도에서 창업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3. 「소재·부품기업법」 제5조제3호에 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소재·부품분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소재·부품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도의 소관국장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3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기능)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곤충종자보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종자생산보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3.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4.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관리
5.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6.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7.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센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p>제·개정이유</p>	<p>○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센터의 기능,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p>
<p>주요내용</p>	<p>○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기능(제11조)</p>
<p>의회 의결일</p>	<p>2019년 9월 2일</p>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4호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심의·자문”으로, 제6호 중 “심의·의결”을 “심의·자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뷰티산업을”을 “소관 업무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촉·해촉)”을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을 해제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9조, 제10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5호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용어를 정비함(제4조, 제11조, 제13조) - “당해” → “해당”, “익월” → “다음 달”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6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2조제19호다목 중 “50%”를 “25%”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외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제23조 중 “지원하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로 한다.

제25조 앞에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5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를 “의거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 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 5.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제29조의2제2항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하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하며,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기업, 타시도 기업 및 도내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제31조의 고용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1조의3(임차료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의 기업이나 창업기업 중 도와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대료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1항 중 “내지 제30조”를 “부터 제31조의3까

지”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를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지원할 수 있다.

- 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③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로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장·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⑥ 시장·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를 “사업이행기간 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제2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 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1%
20명 이상 30명 미만	1.5%
30명 이상 40명 미만	2%
40명 이상 50명 미만	2.5%
50명 이상 60명 미만	3%
60명 이상 70명 미만	3.5%
70명 이상 80명 미만	4%
80명 이상	5%

* 타시도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투자: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증설투자: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진흥기금 용도에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 지원 추가 (제14조)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중복지원(입지, 고용보조금) 가능 (제23조) ○ 국내기업에게 외국인 기업 인센티브 준용 지원(제31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7호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구호사업

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나. 타 시·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타 시·도의 재해 발생 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재해 구호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에 타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8호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충청북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② 도지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기리고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9조(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도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의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7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조례 제4319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3. 도 내 시·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시·군 센터”라 한다)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

4. 시·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 시·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
6. 도 내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관리 사업
7.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8. 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자치법규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제5조)
의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